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9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이훈기 · 정춘생
신장식 · 박은정 · 강경숙
이해민 · 윤종오 · 정혜경
김재원 · 김선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권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직무상 행위, 의례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

그런데 전직 변호사·교수·언론인 출신 공직자 등의 강연·방송출연 등 활동은 통상적인 전문성 활용 행위로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,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 등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은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

특히 문화예술 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문화활동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, 현행 규정만으로는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가수·연주자·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

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·의례행사·공익행사·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·공연·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112조제2항제2호거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2조제2항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가수·연주자·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
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·의례행사
· 공익행사·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·공연·방
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의례적 행위 가. ~ 하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~ 6. (생 략)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가. ~ 하. (현행과 같음)</p> <p>거. <u>가수·연주자·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·의례행사·공익행사·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·공연·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